

환경 보전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李 善 龍*

국제 환경 협력의 태동

인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활 터전인 지구에서 흔히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비와 생산 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그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여러 환경 오염 물질을 지구 생태계에 배출시켜 왔다.

본래 자연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정 처리 능력을 통해 대기중에 배출된 부산물로서의 유해 성분을 바람이나 기체의 유동성을 통한 확산을 통해 그 농도를 희석시켜 왔으며, 물을 매개로 수로에 배출된 유해 물질들은 공기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통해 산화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화를 시켜 자연속의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자연속의 균형과 안정은, 산업 혁명 이후 도시화,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과 더불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과학 기술이 자연에 미치게 될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예견하거나 그를 제거할 과학 기술이 마련되기도 전에 양적 성장에만 집착한 인류의 과욕이 무분별한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 박

차를 가하게 되면서 각국은 어쩔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선진공업국들은 일찌기 이러한 경제 규모의 팽창을 경험하면서도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 파괴가 중국에는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의 달콤함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그들은 항상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간과하거나 무시해 왔던 자유재로서의 공기와 물이 가지는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의 주요한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지구 생태계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인류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 따라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후진국들은 선진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이후,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고 선진국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단순한 기능에 온 것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경제나 산업 발달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뒤떨어진 경제 상황이나 국가 발전 단계를 조속하게 선진공업국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그들에게 이러한 염원을 달성

* 환경처 정책총괄과장,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책학 박사, 환경정책 전공.

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나 방안이 한정되어 있다는 상황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자원을 마구 남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식민지 경제 시대에는 타의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외화를 얻기 위한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유일한 자산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이러한 행태의 결과로서 환경이 파괴되어 기아와 천재지변, 그리고 사막화에 시달리게 되는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진공업국들과 후진국들 사이의 갈등, 즉 남북간의 갈등은 1972년 스웨덴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134 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한 스톡홀름 회의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선진공업국들은 무분별한 경제 개발 정책이 불려오게 될 인류에의 재앙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지구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구촌의 공동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서 각국의 협력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진국들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의 강조하는 이러한 선진국들에게 선진국의 발전과정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좌절시켜 빈부 격차를 영구히 하려는 선진국의 음모라고 까지 비난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과 후진국의 시각차에 따르는 갈등은 급기야는 스톡홀름 회의의 후속 조치로써 설립된 국제 기구인 국제 환경 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의 본부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갈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국제 환경 문제의 여타 분야와의 연계성과 상호 관련성을 이유로 UN 본부가 위치한 미국의 뉴욕이나 스위스의 제네바에 그 기구의 본부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진국들은 새로운 환경 기구가 또 다시 선진국의 수중에서 놀아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은 표결권의 수에서 우세한 후진국의 주장대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UNEP를 유치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제 환경 협력의 새로운 전개

UNEP을 중심으로 한 국제 환경 협력은 그 전담 기구의 설치에서부터 후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게 되어, 캐나다인인 Maurice Strong이 그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이후 약 17 년간을 이집트인인 Mostafa Tolba가 연임되었고 상대적으로 선진공업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공업국들의 재정 지원과 앞선 환경 청정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UNEP의 기능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구호의 양산에 그치게 되어버려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기구의 활동을 굵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후진국들도 이 기구를 통한 결의나 활동이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친다는 한계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기에서 1983년 UN 총회는 더 이상 지구 환경 문제를 이와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당시 노르웨이 환경 장관으로 현재 수상직을 맡고 있는 Ms. Gro Harlem Brundtland에게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세계적인 의견과 행동 지침을 마련할 것을 위임하였고, 이른바 Brundtland Commission은 약 3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UN 총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Brundtland Report인 것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핵심은 환경과 개발간의 조화를 내세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인 바, 이러한 개념의 정립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을 무리없게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환경의 보호는 우리 인류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며 모든 개발 행위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UN 총회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20주년 기념 회의를 이 보고서의 주요 핵심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하기로 정한 바, 이렇게 개최된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 개발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인 것이다. 이 회의에는 160여 개국의 대표가 모여 '리우 선언',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기후 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을 채택, 거의 모든 참가국이 서명을 하는 결실을 맺어서 지구 환

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및 활동의 전개는 각국의 환경 정책은 물론, 경제, 사회,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떠한 선언이나 결의 사항보다는 국가간의 약속을 담은 법적 규범인 국제 환경 협약들이다. 국제적인 환경 협약은 좁은 의미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자간의 협약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흔히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다루는 양자간의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근래 이러한 국제 환경 협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넓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로서의 이러한 환경 협약들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는 집행력의 결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들이 선진공업국들을 중심으로 채택되었거나 채택될 전망이다. 더욱이 경제 구조의 특성상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국제 환경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조치 등을 '강 건너 불'을 보듯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 국제 환경 보호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국제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 규제 조치 내용 이상의 규제 조치를 통상 압력으로 교역 당사국에게 적용시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일단락이 지어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미국과 EC가 주도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새로운 변수로서 '자유 무역과 환경 보호'의 상호 연계에 관한 논의, 이른바 그린라운드가 제기되고 있어 국제 환경 협력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환경 협약의 영향과 대응 방안

1945년 이후 채택되어 이미 발효되었거나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국제 환경 협약은 약 1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협약은 1990년말 현재, 대기 환경 문제에 관한 것이 3 개, 해양 보전 관련 협약이 8 개, 자연 생태계 및 자연 환경의 보호에 관련한 것이 3 개, 핵안전 관리 협약 5 개 등, 총 23 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협약으로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서명한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간 교역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등이 있으며, 오존

층의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미 2차에 걸쳐 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어 있어 각 개정안에 대한 가입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 변화 협약

대기중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 가스(greenhouse gas)의 배출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UNEP와 WMO가 1988년 11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를 설립하여 마련한 동 협약은, 1992년 6월 UNCED에서 채택된 이후 1993년 12월 21일 현재 이미 166 개국이 서명하였고, 미국 등 52 개국이 이미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4년 3월 21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마치고 이미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동 협약에는 구체적인 온실 가스의 감축 조치 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예측,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동 협약에의 비준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표명한 바 있어,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산유국이나 에너지 다소비국에 대한 특별 배려 조항과 개발도상국들의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 조항이 규정되

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온실 가스 감축 기준이 정해지고 관련 부속 의정서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정해지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선발개도국으로서의 경직적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간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14% 이상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사용되는 에너지중 화석 연료의 사용 의존도가 높아 온실 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걸림돌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조정·개편하여 정밀기기 산업이나 유전 공학 관련 산업 등 상대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낮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은 지구상 현존하고 있는 5,000만 종의 동·식물 종자중에서 매년 35,000~50,000여 종이 멸종되고 있는 현실에 입각,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에 의해 마련되어 1992년 UNCED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종래 동 협약에 대해 제약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

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이 클린턴 정부의 출범후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해 금년 6월 중순에 추가적으로 서명을 완료하면서 급진전되었다. 동 협약은 1993년 12월 현재 169 개국이 서명하고 캐나다등 36 개국이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1993년 12월 29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동 협약은 국가별 생물 자원에 대한 자주적인 고유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수립, 생물 다양성 분포 상황의 조사 및 목록 작성·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나라가 보유한 유전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이용국과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전 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약상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견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러한 협약이 효력을 발하게 될 경우 각국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 자원 보유 지역의 보전을 더욱 강화하고, 관리 대상이 될 유전 자원등의 국제 교류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보 단계에 있는 우리의 생명 공학 산업의 장애 요소로 다가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열대림의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열대산 목재의 최대 수입·가공국인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CITES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간 교역의 규제를 위해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된 이후, 1993년 12월 현재 120 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동 협약에 우리나라도 1993년 7월 9일에 가입서를 기탁해 동년 10월 7일 가입국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동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코뿔소 뿔의 불법 거래국 4 개국중 하나로 지적되어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손상은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 민간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CITES 관련 제품 및 일반 수출 품목에 대한 불매 운동이 불법 거래국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협약 가입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미국은 6월 초에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온 중국과 대만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수정 펠리법(Pelly Amendment)에 의거한 불법 거래국 확인서를 발부해 놓고 있어 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종래 동 협약에의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까닭은, CITES 협약에 사향·웅담·호골·구판·천산갑 등의 한약재 및 야생 모피 등이 국제 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한약업계 등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 여론의 악화, 실질적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조속한 가입을 서둘러왔고, 한약업계에서 요청한 유보 항목 5 개중 사향과 웅담만 최장 3 년 이내로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 국민도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지구촌 가족으로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다. 비록 몇몇 품목들의 국제 거래가 규제됨에 따라서 불편이 초래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해서 잃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다른 나라가 이러한 협약의 정신에 따라 포기한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얻던 것이라면 과감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젤 협약

선진공업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성 폐기물이 중남미·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나 원료로 가장되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해성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가 국제적 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아프리카 단결 기구(OAU)의 제안으로 UNEP에서 마련한 동 협약은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고 1992년 5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총 47 종의 유해 폐기물을 지정하여 협약 가입국의 유해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적정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에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협약의 미가입 국가들과의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해 폐기물의 수입이나 수출을 엄격하고 통제해왔으므로 이러한 바젤 협약의 정신은 우리의 유해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과 같은 궤를 지키고 있고, 유해 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1992년에 '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협약은 이미 1992년 5월에 발효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일본이 1993년 후반기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1994년 초 협약 가입을 위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성층권 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1985년에 채택된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협력 방안을 규정한 기본 협약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규제 사항을 정한 것이 1987년 캐나다에서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동 의정서는 구체적인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소비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규제 대상 물질도 확대되고 있고 규제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다. 따라서, 선발개도국으로서 동 의정서상 주요 규제 대상 물질인 CFC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CFC의 사용량 감축과 대체 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협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5월에 원 의정서에, 1993년 3월에 1차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동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가입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의 대상 국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동 의정서상의 CFC 사용량 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CFC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냉장고·에어콘 제조업체 및 전자·정밀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CFC의 회수, 재사용 장치나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수·재사용 설비를 갖추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통해 CFC의 사용 한도량의 규제에 따르는 공급 부족을 완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대체 물질 개발 및 이용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특정 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린라운드 논의의 전개

지난 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자유무역과 환경 보호에 관한 논의가 향후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린라운드라고 불리는 이러한 논의는 과거 환경 규제가 경제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중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현실적인 당면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한 몇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GATT 제20조의 적용 문제

무역 자유화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GATT 체제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 20조를 환경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에 원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즉 GATT 제20조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니고 또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약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예외적인 무역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중 (b)항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g)항은 '유한적 천연 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 제한과 연계하여 취해지는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반적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위의 예외 조항을 통해 인정되는 무역 규제가 자국의 환경 보호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나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것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점이다. 학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감대의 형성과 미국·EC 등 선진공업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 장악에 따라 학설의 대립과는 무관하게 후자쪽으로 국제적 동향이 옮겨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과 EC 등 선진공업국들은 GATT 체제에서 좀더 용이하게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 규제 조치를 수용하려는 GATT 제20조 예외 활용 선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나 홍콩, 일본 등은 환경 보호 조치를 이유로 한 무역 규제 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안별로 GATT 회원국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무역 규제 조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Waiver 활용 선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일방적 환경 보호주의

엄격한 환경 규제 수단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공업국은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화된 환경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후진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해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 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환경 보호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제품 수출 시장이 되는 미국이나 일부 EC 국가에서 동원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국제화 시대에 이러한 주요 수입국들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방적 조치들이 국제적 합의를 거친 환경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조치들보다 가혹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국가별 일방적 조치들이 남용되어 자유 무역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진공업국들이 보호 무역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규제 사항들은 다국적인 동의에 근거한 조치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공업국들은 이러한 일방적 조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비용의 시장 가격화 문제

생산 비용중에 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비용을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후발공업국들이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거나 적정 수준 이하로 반영하는 결과, 국제 시장에

서 부당하게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다는 선진공업국들의 불만은 제반 환경 비용을 생산 비용에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러한 환경 비용이 시장 가격에 내재화되어야 자유 무역의 흐름속에 환경 보호가 수용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학적인 이론을 통해서도 환경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생산 비용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책이 환경 정책에 폭넓게 인정되어야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자유 무역과 환경 보호가 상호 조화를 이루고 지탱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공업국의 명분이고, 이러한 명분의 축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환경 관련 기술이나 청정 생산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생산 공정상 차이에 따른 동종 상품의 차별 문제

이 범위에 드는 차별화 논의는 앞의 추상적 논의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즉 같은 제품이라도 각국의 상이한 환경 규제 기준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은 비록 그것이 동종 상품이라 하더라도 같은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요 논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무역 규제의 대상으로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방법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품질 인증 규격으로서 ISO 18000 시리즈를 일종의 '제품 및 기업체에 대한 환경 적합성 인증 제도'로 제정하여

환경 관리 규격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을 설정하려는 작업이 1991년 이후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작업 결과가 구체화되면 바로 이러한 차별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각국 정부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결국 청정 생산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발공업국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국제 환경 협력 방안

이제 국제 환경 보전 문제는 단순히 지구 환경을 보전하자는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수단으로서의 무역 규제·보복 조치가 수반된 우리 경제·산업에의 걸림돌로 가까이 와 닿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사이의 선발개도국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입장을 같이 나눌 동지도 없이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구 환경의 악화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책임과 의무는 강조해야 하지만, 후발공업국 내지 선발개도국으로서의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선진공업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정 기술의 이전 및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그들의 재정 부담을 원인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정한 수준의 피할 수 없는 의무나 부담은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향후 국제 환경 협력 방안의 논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와 전향적인 자세가 리우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설치된 UN의 환경 보전 전담 위원회인 '지속 개발 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사국이자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향후 국제 환경 협력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UN 산하기구인 CSD가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향후 CSD가 주도하는 지구 환경 관련 활동에 현재의 이사국으로의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 이전 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CSD의 후속 작업에서 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의 환경, 산업 및 경제 정책도 환경 문제와 관련한 국제 동향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 특히 환경과 무역에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동향에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개될 그린라운드 논의에 범정부적인 적극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CSD의 활동과 발맞추어 종합적인 지구 환경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셋째, 선후진국 구분없이 각종 지구 환경

보호 협약의 조기 발효 및 적극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고 협약의 미가입 혹은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협약의 전개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미리미리 이러한 국제 동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나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지구 환경 현안 관련 대외 협상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입장정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NGO들과의 교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이러한 입장의 정립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대처 방안

과거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보호라는 것을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파악해 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뿌리깊은 전통적인 인식을 고수하고 있는 경제 개발 우위론자들에게는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 환경 협력 강화 방안과 이와 관련한 무역 규제, 특히 그린라운드 논의라는 것이 매우 생경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선진공업국들이 펼쳐가는 무역 규제 공세에 건디기 어려우며,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국제 동향에 신

속히 적응할 도리외에는 없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 구조의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에 신속히 적응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후발공업국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선진공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경제 발전의 최첨병이자 무역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가용 자원으로서의 인력, 자원, 기술·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향적인 그린化(green化)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대응 체제의 구축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주역인 무역 업체들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의 제정·강화와 관련되거나 그린라운드 논의에 따라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진 제품이나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 환경 협력의 동향을 수집·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의 침엽수림의 개발을 추진했던 국내 기업이 야생 동·식물 보호를 이유로 국제 민간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좌절된 사례나, 코뿔

소 뿔과 호랑이 뼈의 불법 거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무역 규제 대상국 지정을 받게 된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기업도 국제적인 환경 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각 기업은 정부가 전개해 나아가는 환경 정책을 예의주시하여 수용하고, 기업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이제 환경 기술의 핵심은 과거의 사후적인 오염 처리 기술에서 공정상의 청정 생산 기술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일반 기업체에게 전담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도 G7 과제로 선진 환경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활동의 주역인 기업에서 소요되는 기술과 예산을 정부에게 제시하여 지원을 얻도록 하는 효율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유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 기준 및 배출 허용 기준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불법적인 배출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환경 기술의 개발이 유도되고 이를 기초로 한 생산성의 향상만이 그린라운드의 파고를 넘는 전략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 기술의 잠재적 시장인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진출 기반을 닦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향적 그린화 정책의 추진

우리나라는 1996년 초반 OECD 가입 관련 모든 환경 규제 수준을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1993년 지구 환경 대책 장관 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 환경 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방지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하여 기업체의 환경 관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전향적인 환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환경 관련 규제는 불필요한 절차상의 형식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 활동의 그린화를 추진해야 하는 바, 환경 친화적인 공정의 개발·적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청정 생산 기술의 개발·채택은 앞으로의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인식의 전환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국제화 시대에서는 냉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승리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환경 규제를 완화시켜야 생산비 부담이 낮아지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국제 시장에 나가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이기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정책에 따라 파괴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일반 국민이나 우리의 후손들은 기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평성을 가져오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오염시킨 것의 처리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는 이른바 오염자 부담 원칙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일반 국민에게 폭 넓게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각 분야의 정책 담당자도 이러한 명제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환경 정책이 시행되어야 각 산업체가 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서두르게 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계기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의 높은 파고를 우리에게 유리한 계기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과 경제를 후발공업국과 차별화하고 한 단계 높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환경 정책이 수립·추진될 경우,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